

공화국 법령 번호 29-89

과테말라 공화국 국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

과테말라 공화국 헌법이 제정하는 여러 가지 정부의 주요 의무중의 하나는 효율적 그리고 계획적인 해외 무역의 장려와 국내 및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 적절한 환경을 창출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또한 천연 자원과 인적 자원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국부를 축적하고 충분한 고용 및 국가 수입의 균등한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국내 경제를 이끌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나라가 다른 국가와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출과 보세 임가공 진흥법을 공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과테말라 공화국 헌법 171조 a)항이 부여하는 직권으로 다음의 자유 무역 지대 법을 법령으로 공포한다.

수출 및 보세 임가공 (마길라) 활동 진흥법

1장 적용 분야

1조

이 법은 국내 영토에서 중미 지역 외 국가에 수출을 위해 생산된 상품의 생산을 진흥, 장려,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또한 수출 활동 또는 마길라 활동 운영을 완전 변형 규정 또는 국산 자재 사용 수출 제도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2조

이 법이 허용하는 혜택은 모든 형태의 커피, 모든 형태의 까르다모모, 껍질 벗기지 않은 참깨, 바나나, 일반 소와 혈통 있는 소의 목축, 생 쇠고기 또는 냉장, 냉동된 쇠고기, 정제되거나 정제되지 않은 설탕용 사탕수수과 당밀, 코웁하지 않은 면, 원유, 목재(원목, 통나무, 큰 나무판, 합판) 수출 업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조

이 법의 목적을 위해 아래에 명시된 정의들에 주의를 해야 한다.

a) 완전 변형 제도 : 국내 영토에 제삼국산 자재를 유입하여 중미 외의 국가로 완제품 형태로 수출할 경우 이 유입된 자재에는 수입 관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

b) 마길라 : 상품의 생산 또는 조립으로 받은 자원 또는 노동 서비스를 통한 국내 부가 가치의 창출을 의미한다.

c) 회사 : 공화국 법에 따라 설립된 개인 또는 법인 소유 생산 단위.

d) 조립하다 : 부분, 조각, 작은 세트 또는 세트를 연결하는 활동으로서 결합이 된 후에 부속과는 다른 성질을 지닌 상품이 되어야 함.

e) 수출 :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국내 상품 또는 국내화 된 상품이 국내 세관 영토 밖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함.

f) 마모 또는 로스 : 이는 변형을 하는 사이에 증발, 건조, 가스, 물의 형태로의 누출에 의해 파손되거나 또는 사라지는 부분이다.

g) 간접 수출자 : 상품, 원자재, 반제품, 재료, 용기 또는 포장재를 이 법의 수혜를 받는 회사에 공급하는 회사로서 이 제품들이 중미 외 국가로의 수출되는 상품에 결합되어야 한다.

h) 부산물 : 어떤 제품의 제조하는 과정에서 그에 딸려 얻어지는 다른 상품.

i) 찌꺼기 : 수출 상품의 생산 또는 조립에 사용된 원자재 잉여물 또는 찌꺼기, 재단하고 남은 천 조각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

j) 재수출 : 국내로 들어온 외국산 자재이지만 국내화 되지않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국내 영토 밖으로 나가는 것.

k) 국내 세관 영토 : 세관이 권한을 집행하는 영역으로 국내 세관 및 관세법

을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이다.

4조

이 법의 혜택은 국내 또는 외국산 자재를 생산 공정에 사용하며 또한 이 공정의 결과로 부산물, 마모, 찌꺼기 등이 있는 회사들이 누린다.

5조

이 법의 적용을 위해 상품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완전 변형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a) 관세 유예 제도 : 원자재 수입하여 국내에서 조립 완성된 생산 품목에 대한 수입세, 부가가치세를 유예하고 수입 후 1년 내에 수출하거나 재수출하는 경우 이 유예된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주어진 1년 기간이 만료될 경우, 한달 전(11개월째)에 미리 연장 신청을 하면 다시 1년의 연장 기간을 받을 수 있으며 연장은 1회에만 할 수 있다.

b) 관세 환급 제도 : 이는 수출 또는 재수출이 되고 나면 납부한 관세, 수입세, 부가 가치세환급을 허용하는 제도로서 수입된 상품, 이 상품에 포함된 품목 또는 이 상품의 생산 과정에서 사용된 소비재에 대해 납부한 세금을 환급해준다.

c) 관세 감면 제도: 이는 수입 관세 및 세금 면제를 간접 수출 업체가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및 세금을 일치하는 금액만큼 면제해주는 것이다. 이 면제는 원자재, 반가공품, 중간재, 부자재, 용기, 포장재, 라벨 등 수출 공정과 직접 관련된 자재들로 대체된다.

d) 국산 자재 면세 제도 : 이는 한 회사가 수출품 제조 또는 조립을 위해 전체 생산 공정에 국내 자재 또는 국내화 된 자재를 사용하는 회사에 적용한다.

6조

이 법에 의해 회사들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얻을 수 있다 :

a) 관세 유예 제도 하의 마끼라 업체

- b) 관세 유예 제도 하의 수출업체
- c) 관세 환급 제도 하의 수출업체
- d) 관세 감면 제도 하의 수출업체
- e) 국산 자재 면세 제도하의 수출업체

7조

관세 유예 제도하의 마길라 활동은 외국산 자재가 가격의 51% 이상을 포함하며 중미 외의 국가로 재수출하기 위한 상품의 생산 또는 조립을 의미한다. 그리고 재무부의 승인을 받은 특정 보증, 금융 기관의 보증 또는 보세 창고로 승인된 곳에 기탁을 통해 임시로 수입된 자재의 체류를 보증해야 한다.

8조

관세 유예 제도하의 수출활동은 중미 외의 국가로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에 집중된 활동을 의미하며 재무부의 승인을 받은 특정 보증, 금융 기관의 보증 또는 보세 창고로 승인된 곳에 기탁을 통해 임시로 수입된 자재의 체류를 보증해야 한다.

9조

관세 환급 제도하의 수출활동은 중미 외의 국가로의 수출 또는 재수출을 목적으로 상품의 조립 또는 생산을 의미한다. 이 경우 임시로 수입된 자재의 체류를 현금 예치하여 보증해야 한다.

10조

관세 감면 제도하의 수출활동은 수출업체에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재의 생산을 의미하며 수출업체가 이 자재를 중미 외의 국가로 수출하기 전에 수출 상품에 통합, 병합 또는 부가한다.

11조

국산 자재 면세제도하의 수출활동이란 중미외의 국가로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의 생산 또는 조립을 의미하며 전체 자재가 국산 또는 국내화 된 것을 사용한다.

2장

혜택

12조

개인 또는 법인 소유의 회사들이 관세 유예 제도하의 수출 활동 또는 마길라에 종사할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린다:

a) 경제부에서 발행한 수입 승인 리스트에 일치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생산한 상품의 수출 또는 재수출을 위해 필요한 원자재, 중간재, 자재, 용기, 포장재 및 라벨등에 대한 수입 관세 및 세금과 IVA 유예. 수입 면장 승인 날짜로부터 1년간 유예되며 이 기간은 같은 기간에 한해 1번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 신청은 면장 만료 기간 30일 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b) 생산 공정 또는 조사 및 지시 사항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한 모델, 패턴, 설명서, 샘플집, 샘플등의 수입 관세 및 세금, IVA 유예. 수입 면장 승인 날짜로부터 1년간 유예되며 이 기간은 같은 기간에 한해 1번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 신청은 면장 만료 기간 30일 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c) 국내에서 조립 또는 생산되어 중미 외의 국가로 수출한 상품으로부터 획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전체 면제해준다. 이 면제는 경제부에서 자격 허가서 통보 날짜 이후 첫 세금 부과 날짜부터 10년 동안 허용한다.

이 면제 적용을 위해서 수혜 납세자는 비용과 영구 재고의 회계 시스템을 중미 외 지역으로 수출이 된 것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각각의 비용과 지출에 대한 운영 비용 시스템을 따로 정리해야 한다.

해외에 주재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과테말라에 지점, 에이전시 또는 영구 소재지를 두고 과테말라에서 운영하는 경우 상품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마길라 및 수출 활동을 하더라도 과테말라에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 면제는 받을 수 없다.

d) 경제부에서 자격 허가서에서 정한 생산 공정에 필요한 기계, 장비, 부속, 부품 및 액세서리에 대해 수입 면장 승인 날짜로부터 1년간 수입 관세와 IVA를 포함하는 수입세의 임시 유예. 이 기간은 세관 당국에 의해 같은 기간에 한 해 1번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 신청은 면장 만료 기간 30일 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e) 경제부의 자격 허가서에서 정한 생산 공정에 필요한 기계, 장비, 부속, 부품 및 액세서리에 대한 수입 관세 및 IVA를 포함한 수입 세금 완전 면제.

f) 수출에 대한 일반세 및 특별세 완전 면제.

13조

관세 환급 제도의 혜택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 소유의 회사는 원자재, 반제품, 중간재, 자재, 용기, 포장재 및 라벨 등 수출 상품의 생산 또는 조립에 사용된 자재의 수입을 보증하기 위해 지급한 수입 관세, 수입 세 및 IVA를 환급 받을 권리를 가진다. 환급 신청 기간은 관련 수입 면장 허가 날짜로부터 6개월 내에 할 수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린다:

a) 국내에서 생산 또는 조립하여 중미 외로 수출된 상품으로 인해 획득 또는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완전 면제. 이 면제는 경제부 자격 허가서 통보일 이후 세금 부과부터 10년간 허용된다.

이 면제 적용을 위해서 수혜 납세자는 비용과 영구 재고의 회계 시스템을 중미 외 지역으로 수출이 된 것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각각의 비용과 지출에 대한 운영 비용 시스템과 따로 정리해야 한다.

해외에 주재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과테말라에 지점, 에이전시 또는 영구 소재지를 두고 과테말라에서 운영하는 경우 상품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마길라 및 수출 활동을 하더라도 과테말라에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 면제는 받을 수 없다.

b) 일반세 및 특별세 면제.

14조

관세감면제도의 혜택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 소유의 회사가 현행법 하에 원자재 수입시 관세와 세금을 지불하고 이 원자재를 사용하여 제삼자에 의해 수출될 상품을 제조하였을 경우 지급한 관세 및 세금에 일치하는 액수만큼의 감면 혜택을 누린다. 이 감면을 통해 얻은 이익은 원자재 교체, 중간재, 자재, 용기, 라벨등 생산 공정에 직접 사용된 자재들에 사용된다.

이 제도의 혜택 하에 수입 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 감면 허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이다.

15조

국산자재 면세제도에 따라 회사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린다 :

- a) 경제부 자격 허가서에 기재된 생산 공정에 필요한 기계, 장비, 부속, 부품, 악세서리의 수입에 대한 수입 관세 및 세금, IVA의 완전 면제.
- b) 국내에서 생산 또는 조립되어 중미 외로 수출된 상품에 한하여 이로 인해 획득 또는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완전 면제. 이 면제는 경제부 자격 허가서 통보일 이후 세금 부과부터 10년간 허용된다.

이 면제 적용을 위해서 수혜 납세자는 비용과 영구 재고의 회계 시스템을 중미 외 지역으로 수출이 된 것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각각의 비용과 지출에 대한 운영 비용 시스템과 따로 정리해야 한다.

해외에 주재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과테말라에 지점, 에이전시 또는 영구 소재지를 두고 과테말라에서 운영하는 경우 상품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마길라 및 수출 활동을 하더라도 과테말라에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 면제는 받을 수 없다.

- c) 일반세 및 특별세 완전 면제.

16조

관세유예 제도하의 회사는 이 제도 혜택을 받거나 받지 않는 다른 회사의 생산 서비스를 하청 계약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제부 산하 산업 정책국에 사전에 허가 신청하면 세관 당국에서 결정하여 통보할 것이다.

17조

관세유예제도와 국산자재면세제도 하의 회사들은 경제부 산하 산업정책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서 생산 활동에 사용되는 기계, 장비, 부속, 부품, 악세서리를 다른 회사로 이전할 수 있는 데 양도 받는 회사가 양도해주는 회사와 같거나 더 많은 혜택을 가지는 회사여야 한다. 또한 이 자산이 이전되자마자 회사의 생산 활동에 투입되어야 한다. 산업정책국이 세관 당국에 이를 통보할 것이다.

18조

현행법에 제정되고 경제부에 의해 허가된 이 혜택들은 경제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만 제외하고 타인에 이전될 수 없다.

이를 위해 이 법의 혜택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 소유 회사들은 혜택을 이전할 수 있는 데 양수인이 양도인과 똑 같은 조건을 갖추었을 때만 가능하다. 이 이전 신청은 경제부 산하 산업정책국에 제출하면 산업 정책국이 관련 절차와 결과를 통보할 것이다. 이 법의 규정은 혜택 양도에 대한 절차와 조건을 제정할 것이다.

19조

한 회사가 다른 두 제도의 수혜 자격을 받을 수 있는 데 이를 위해서는 다음 장에 제정된 내용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의 혜택이 두 배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3장 절차

20조

한 회사가 현행법의 수혜 자격을 얻어 허용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당사자는 경제부 산하 산업정책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이 기관에서 제공하는 안내서에 나와있는 조건과 자료에 맞게 작성되고 경제학자 또는 산업 엔지니어의 서명이 된 투자 조서 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21조

산업정책국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이 넘지 않는 기간 내에 신청서 관련 의견을 발표할 것이다.

22조

경제부는 의견 발표일로부터 15일이 넘지 않는 기간 내에 이 의견을 근거로 자격 신청서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23조

현행법 하의 회사는 자격 허가서 내용의 수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데 정당한 이유에 근거해야 한다. 수정 절차 및 기간은 현행법 21,22조에서 정해진 것과 같다.

24조

관세유예제도, 관세환급제도, 국산자재면세제도의 수혜 자격 신청 이후와 자격 승인 발표 전에 원하는 상품의 수입이 가능하다 수입 관세, 수입 세금 및 IVA를 현찰 기탁 또는 보증 을 통해 보증된 액수만큼만 가능하다.

25조

산업정책국이 제출된 신청 건에 대해 추가 자료를 요청하여 60일 내에 답변을 받지 못하거나 신청 절차를 중지할 경우 이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되고 이 조치에 대한 서류를 보관할 것이다.

26조

당사자는 자격 허가를 통해 받은 혜택의 취소를 경제부 산하 산업정책국에 신청할 수 있으며 산업정책국은 이를 즉시 세관 당국에 통보할 것이다.

제4장 보증 및 의무

27조

국내 영토로 유입되는 상품의 관세, 수입세금, IVA의 총 합계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국고에 보증된다:

- a) 관세유예제도 하에서는 피안사, 재무부에 의해 승인된 특정 보증, 금융 기관의 보증 또는 보세 창고로 승인된 곳에 기탁을 통해 이러한 종류의 운영을 보증한다.
- b) 관세환급제도 하에서는 현금 기탁을 해야 한다.

29조

전 조항에서 규정된 내용의 발효를 위하여 당사자는 승인 또는 재수출 날짜 이후 45일 이내에 발효를 위해 이 법에 이 사항을 규정하는 문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산업정책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 신청이 위에서 기재된 날짜 안에 제출되지 않을 경우 기탁된 금액은 과테말라 정부 공동 기금 계좌로 입금되거나 설정된 보증은 정부에 현금으로 지급된다.

30조

현금 기탁으로 보증된 관세, 수입세금, IVA는 수출인이 환급 신청 후 30일 이내에 산업정책국 또는 세관이 발행한 수표로 환급되며 이를 위해선 이 법에서 환급 부분을 규정하는 문서를 첨부해야 한다.

31조

재무부는 관세감면제도하의 수출인 자격을 가지는 개인 또는 법인 소유 회사에 산업정책국의 의견을 근거로 수출인의 신청 후 90일 이내에 생산 공정과 직접 관련되는 원자재, 반제품, 자재, 용기, 포장재를 관세, 수입세금 면제하의 수입을 허가하는 허가서를 발행한다.

32조

관세유예제도 및 관세환급제도 자격을 가진 회사를 위해 원자재, 반제품, 중간재, 자재, 용기, 포장재 또는 라벨이 도착하였는 데 수입 상품에 병합되기 위한 필수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산업정책국의 사전 검사와 이 상황이 증명되면 재수출할 수 있으며 사후 관리 또는 관세 환급을 받거나 또는 도착한 상품에 일치하는 손해 비율을 적용하여 국내화 할 수 있다.

33조

관세유예제도 및 관세환급제도하의 수출인 자격을 가진 회사는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 a) 수출활동 또는 마길라 활동을 위한 상품의 생산을 자격 허가서에서 기재하는 기간 또는 주어진 연장 기한 내에 시작해야 한다.
- b) 매월 20일 이내에 수출입 신고서와 그 사본 그리고 수출입 면장과 그 사본을 산업정책국에 제출해야 하며 이 법의 제도에 일치하는 상품 명세서를 이 규정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기재해야 한다.
- c) 임시로 유입된 상품의 회계 장부와 영구 재고 시스템을 보유해야 하며 수출 또는 재수출된 상품의 사용된 수량도 계속 기록해야 한다.
- d) 수출 상품의 생산 또는 조립에 필요한 자재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및 생산 공정에 의해 발생하는 마모, 부산물, 찌꺼기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산업정책국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 e) 이 법의 올바른 적용을 위한 기타 자료를 제공하며 또한 산업정책국 또는 세관의 판단에 필요하다고 고려되는 검사도 받아야 한다.
- f) 국내법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노동법을 준수해야 한다.

34조

관세감면제도 하의 수출인 자격을 받은 회사들은 d), e), f)항에서 정한 내용만 준수하면 된다.

35조

국산자재면세제도 하의 수출인 자격을 받은 회사들은 33wh a),e),f)항에서 정한 내용만 준수하면 된다. 또한 기계,부속, 자재, 액세서리의 수입 면장의 사본을 이 면장 정산일 후 4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6조

관세유예제도와 관세환급제도 하에 수출인 또는 마길라 자격을 받은 회사들이 생산 시 발생하는 부산물, 찌꺼기는 국내화, 폐기, 재수출 또는 세관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은 자선 단체들에 기증될 수 있다.

5장 관리

37조

세관 당국은 관세유예제도와 관세환급제도 하에 수출인 또는 마길라 자격을 받은 회사들이 예치한 보증금과 공탁금 관리를 하며 또는 관세감면제도 하에 수출인 자격을 받은 회사들에 발행된 증명서 관리를 한다.

38조

세관 당국은 관세유예제도 또는 관세환급제도 하에 국내 영토로 유입된 상품 수량 장부 관리를 하며 또한 수출 상품의 생산 또는 조립에 사용된 수량 장부도 관리한다.

6장 금지 사항과 제재

39조

관세유예제도 하에 수출인 또는 마길라 자격을 받는 회사들은 임시로 유입된 상품을 관세와 해당 세금을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 영토에 어떤 형태로든 양도를 할 수 없다. 재무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선 단체에 기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0조

이 법의 혜택 하에 수입되는 기계, 장비, 부속, 부품, 액세서리는 관세, 수입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거나 또는 수입면장 승인 일로부터 5년이 지나서 산업정책국(세관 당국에 통보)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래 승인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양도 또는 사용될 수 없다.

41조

이 법의 혜택으로 수입 또는 유입된 상품의 권리의 양도 시 또는 혜택을 인가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의 권리 사용 시 적용 세금 100%를 벌금으로 물리며 현행 세관법에서 정한 다른 제재의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조항을 어긴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는 정부가 유예한 세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다.

42조

임시로 유입된 상품이 파손되고 세관 우선 지역에 있지 않을 경우 세금과 기타 정부가 유예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재무부에 의해 증명된 불가항력의 경우는 제외한다.

43조

다음과 같은 경우 경제부는 세관과 국세청에 자격 허가 철회서 사본을 발송함으로써 자격을 철회한다 :

a) 회사가 자격 허가서에 정해진 기일 또는 연장된 기일 내에 생산을 시작하지 않았을 때

b) 회사 폐업, 해산 또는 파산

c) 자격 허가서에 있는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c)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정책국은 위반하는 회사에 단 한번만 경고를 할 수 있으며 경고장 사본을 세관에 발송한다.

44조

이 법의 발효 시 법령 21-84의 혜택을 누리는 회사들은 이 법령의 발효일이 끝날 때 까지 계속해서 혜택을 누린다. 이를 원하는 회사들은 이 법이 발효된 날짜 후 12개월 내에 자격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자격을 받은 회사들은 법령 21-84에 따라서 소득세를 공제한다.

7장 임시 명령과 최종 명령

45조

진행 중인 법령 21-84의 자격 신청 건들은 이 법의 공포 후 30일 이내에 경제부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

46조

관련 당국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당사자는 세관에 제정된 그리고 해당하는 행정 소송 법에 제정된 중재 청구를 할 수 있다.

47조

이 법과 규정에서 예상되지 않은 건은 경우에 따라서 경제부, 재무부 또는 양측에 의해 판결될 것이다.

48조

경제부와 재무부는 이 법의 엄격한 준수를 감시한다.

49조

법령 21-84와 그 규정은 철회되며 이 법에 반대되는 모든 처분도 또한 철회된다.

50조

행정부는 경제부와 재무부를 통해 본 법안 발표 후 45일 이내에 세부 부칙을 발행한다.

51조

이 법령은 관보 공포 후 30일 후에 발효된다.

공포와 시행을 위해 행정부에 전달

1989년 5월 23일, 과테말라 시, 입법부에서 서명.